

# 구성원 참여·소통 운영규정

(제정 2019. 9. 1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분)** ① 본교의 구성원은 교내 구성원과 교외 구성원으로 구분한다.

② 교내 구성원은 재학생, 교원, 직원을 말한다.

③ 교외 구성원은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, 지역사회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)** 이 규정은 본교의 교내·외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
## 제2장 참여소통위원회

**제4조(설치)**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참여소통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<개정 2020.11.4.>

③ 교수회장, 직원회장, 총학생회장, 대학평의원회 동문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
2.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
3. 학과,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
4.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20.9.1.>

**제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운영절차

**제8조(계획수립)** ① 기획처장은 매 학년도 구성원 참여와 소통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
2.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
3.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활동 평가 및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

**제9조(세부실행방안)** ① 교내·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장 비서실에 바로바로센터를 두며, 이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바로바로센터 운영지침」으로 정한다.

②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재학생,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운영규정」으로 정한다.

③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취업처에 총장이 주관하는 학생모니터를 두며, 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학생모니터 운영지침」으로 정한다.

④ 대학평의위원회, 등록금심의위원회,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와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 등 학사에 관한 주요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대표성 및 구성절차, 결과의 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.

**제10조(결과보고)**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운영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 또는 그룹웨어를 통해 구성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환류체계)**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대학경영계획 및 대학중장기발전계획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